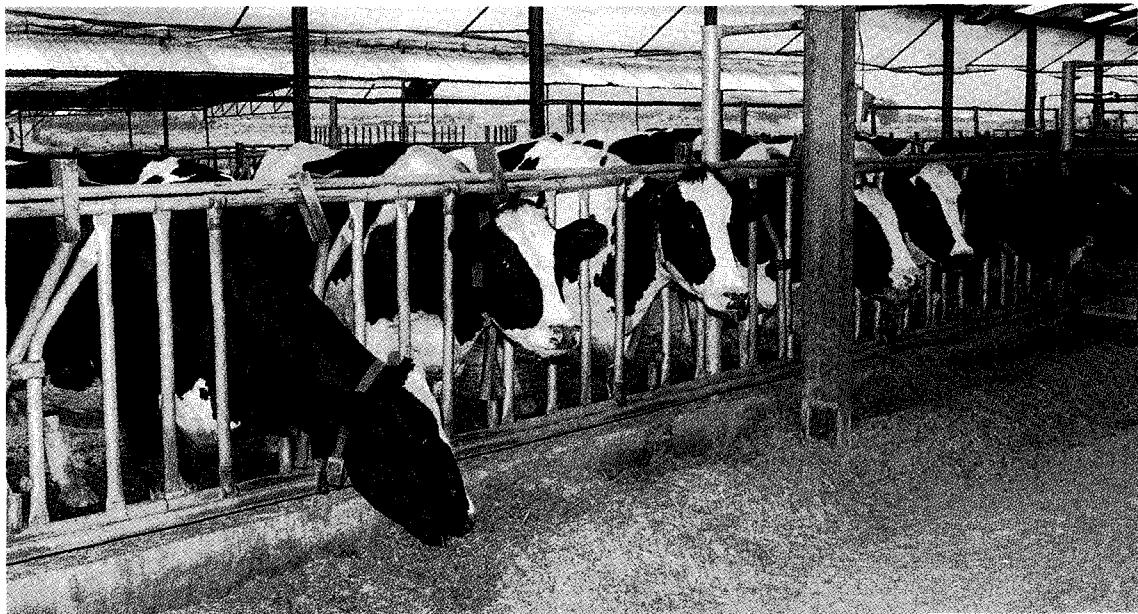


축산업등록제는 규제가 아닌 인센티브 위주로 도입되어야

〈이혜영 / 본회 지도부 대리〉



□ 축산업 등록제의 골자

농림부가 제시한 축산업등록제의 시행방안을 보면 이러하다. 젖소의 경우 축사면적 100m²이상 농가(약 10두 규모 농가)는 모두 등록해야 한다. 04년까지는 축사면적 500m²이상 사육 농가, 05년까지는 100m² 이상 농가가 모두 등록을 해야 하는 대상에 속한다.

등록한 농가들에는 준수사항이 있다. 가축 두당 최소 축사면적을 갖추어야 하고, 시설·장비기준에 맞도록 설치해야 하며, 환경친화를 위한 교육 이수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축 두당 최소 축사면적 중 깔짚우사는 12.8m²/두, 계류우사 8.7m², 후리스틀 우사 9.1m²가 되어야 한다. 또한, 시설·장비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축사시설 300m²이상이 농가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규정된 소독 설비 기준에 적합(300m²이하 농가는 소독 실시 의무)해야 하고, 방류수 수질 기준을 지킬 수 있는 가축분뇨 처

리 시설 등을 구비해야 한다. 아울러 가축질병 방역, 축산분뇨 적정 처리, 조사료 확보 방안 등 매년 1회 이상 환경친화를 위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만약,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2년 이상 징역 또는 이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축산업 등록 준수사항을 위반시 5백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 방안이다.

□ 그동안 협회에서 제시한 문제점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낙농가는 축사 100m²이상(10두 규모)으로 94%이상이 등록대상이어서 타 축종과 형평성이 현저히 결여된다. 젖소와 한육우는 축사 100m²(10두 규모), 돼지는 50m²(50두), 닭 300m²(3천두)이상 농가로, 한육우는 전체농가의 14%, 돼지는 59%, 닭은 2% 수준에 불과하다. 젖소의 경우, 영세농가까지 모두 포함되어 등록대상이 되므로, 소독설비 및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갖추

기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농림부가 밝힌데로 가축질병 예방 및 축산물 안전을 위해 등록제를 도입한다면, 등록되지 않은 농가에는 질병예방이 축산물 안전성이 보장된다는 뜻인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다. 질병 예방과 안전성은 축주의 방역 활동과 의식개선이 우선시 되는 과제라고 생각한다.

타 축종과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되고 낙농가를 설득시킬 명분도 없다. 정부에서 말한 바와 같이 절소 두당 분뇨발생량이 45.6t로 많기 때문에 대다수 낙농가가 등록대상이 된다면, 두당 축사면적 등을 규제할 것이 아니라, 분뇨를 조사료포에 활용하는 대책이라든지, 자급 조사료 확보를 위한 친환경 낙농직불제 도입이라든지의 대책이 우선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개선방안

축산업 등록제를 도입하려면, 친환경 낙농직불제와 연계하여 규제가 아닌 인센티브제로 해야 한다. 조사료포나 우사 면적 등 일정 요건을 제시하고,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킬 때 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되어야 한다. 특히, 풀사료 재배 등 자급 조사료 확보 방안을 최대한 유도하는 것이 우리 현실에서 친환경 낙농경영의 유도 방안이다. 일정 조사료 면적 확보시 퇴비는 필수적이므로 분뇨문제도 해소될 수 있다. 또한, 쌀이 남아 노는 논에도 직불금을 주는 등 재배 면적 조정이 최대 관심사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두당 우사면적 기준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편법적 수단이 생겨날 수도 있고 친환경 취지도 흐려질 수 있다. 또, 지나친 규제와 제재로 축산농가의 사기 저하로 크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친환경 낙농직불제는 일정 요건에 충족되면 직불금이 지불되는 제도이므로

우리 낙농을 친환경적으로 자연스럽게 유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사전에 별도의 등록제를 실시하고, 다시 등록 농가중 강화된 요건으로 선별하여 직불금을 지급하는 이중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 다시 말하자만, 일정 요건의 친환경 직불제를 설정하고, 이를 등록토록 하여 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안으로 마련하자는 것이다.

그 동안 협회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회의와 공문을 통해 현재 농림부가 제시한 축산업 등록제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또한, 지난 6월 25일 농림부가 농협 서울지역본부에서 개최한 축산업 등록제 공청회에서도 입장을 분명히 제시하였고, 공청회에 참석한 대다수의 낙농가들은 축산업 등록제는 농가에 규제만을 하는 방안으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었다. 축산업 등록제가 낙농가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규제만을 강화하는 등록제를 도입해서는 안될 것이다. ④

〈사육규모별 가구수〉 (단위: 가구수)

지 역	1~9두	10~49두	49두 이상	계
서 울	0	2	1	3
부 산	3	21	9	33
대 구	15	86	35	136
인 천	12	85	45	142
광 주	7	12	6	25
대 전	3	3	1	7
울 산	2	20	15	37
경 기	241	2,407	1,707	4,355
강 원	52	322	170	544
충 북	16	440	255	711
충 남	84	1,116	660	1,860
전 북	36	305	393	734
전 남	23	358	412	793
경 북	29	642	487	1,158
경 남	12	338	375	725
제 주	0	17	57	74
전 국	535	6,174	4,628	11,337

※ 국립농물품질관리원, 2003년 6월 가축통계